



한국교통안전공단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미수검 중 운행제한 안내

1. 귀 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근거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제2항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9조(사업용 자동차 운전자의 자격요건 등)제3항의2

다.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제7조(재검사기간 등)제2항

3. 관련법에 따라 운수종사자는 적법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운전적성정밀검사를 수검**해야하며, 특히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검사 대상자는 수검 이전 승무가 제한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조합에서는 소속 회원사에게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운전적성정밀검사(특별) 수검 대상

1) 중상 이상의 사상사고를 일으킨 자

※경찰 교통사고 기록 기준 중상(3주이상) 사고

2)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계산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자

3) 질병, 과로, 그 밖의 사유로 안전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인지 알기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신청한 자

붙임 : 붙임) 근거 및 처분조항에 대한 관련법령 1부. 끝.

한국교통안전공단서울본부장



수신자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 서울특별신택시운송사업조합

연구원

송승진

처장

전결 2024. 7. 5.

홍정표

협조자

시행 안전관리처(서울)-2066

(2024. 7. 8.)

접수

우 03937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20(성산동)

/ www.kotsa.or.kr

전화번호 02-309-5000

팩스번호 02-375-1274

/ quterbin@kotsa.or.kr

/ 대국민 공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갑니다.